

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27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7년 4월 23일

발 의 자 : 총무보사위원회

위원장 민태승의원외 3인

1. 수정이유

상수도 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지휘·감독 권한을 조정함.

2. 수정주요골자

○ 소관 업무의 지휘·감독 권한을 조정함. (안 제4조)

과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과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중 단서를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	비 고
제4조(소장)①사업소 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.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 의 업무를 관장 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	제4조(소장)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 한다. 다만, 제3조 제1호 및 제2호, 제8호 규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건 설도시국장의 지휘· 감독을 받는다.	제4조(소장) (단서삭제)	